

제 1097 호  
1985.5.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모 원호  
편집인 : 공보관 조남호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 시보

## 차례

### ◎ 조례

제 2004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 개정조례 ..... 3

### ◎ 고시

제 336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 사용료고시 ..... 5

제 33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7

제 338 호 :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시행허가고시 ..... 8

제 33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 9

제 340 호 : 울지로 2 가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 10

제 341 호 : 원서근린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13

### ◎ 공고

제 31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 15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099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5. 22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 조례제 2004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자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원입장료

(별표 1)

공원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일반공원	어른 1회당	200	○ 단체는 기본요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
	청소년	150	
	어린이	100	
어린이 대공원	어른 1회당	300	○ 조기 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 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
	청소년	300	
	어린이	150	
서울대 공원	어른 1회당	1,000	
	청소년	800	
	어린이	500	

주) ○ 어린이: 만 7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다만 유희 및 운동시설 사용료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 자로함)

- 청소년: 만 13세이상 18세이하의자
- 어른: 어린이, 청소년 및 만 6세이하의자 이외의 자
- 단체: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16-4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공통	운동장사용	1회 3.3㎡당	15
	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10,000
	영화촬영	주간 1회당	55,000
	녹화	1시간당	11,000
		초과시간당	5,500
	유회시설	인근시설 사용료의 90%이내	○ 어린이 수영장은 관리
	운동시설	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운영비 범위내에서 청탁
	기타시설	단, 자유지상 민자시설 사용료	는 인근시설 사용료를 초과하
		는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
		이 승인함	이 승인함
서울대	돌고래수장	어른 1회당	300
	관람료	청소년 "	200
		어린이 "	100
	무궤도 열차	어른 1회당	400
		청소년 "	300
		어린이 "	200
	수하물보관	1일 1회당	300
	주차장사용	대형 1회당	초과 1일당 300 원
		소형 "	1,070
	어린이 야외음악당	주간 1회당	500
대공원	사용료	33,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남산식물원 입장료	어른 1회당	200
	공원	청소년 "	100
		어린이 "	50
	차량 통행료	버스, 대형화물	650
		승용, 마이크로버스	450
		이륜, 소형화물	250
	전망대 입장	어른 1회당	1,100
		청소년 "	750
		어린이 "	750
부가기초세 별도			

## 고 시

표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6 호

도시공원시설사용, 사용료고시

1985. 5. 2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

서울특별시장

## 도시공원시설사용료

종별 시설명	사용구분	금액	비고
운동시설	탁구장사용료	단식: 어른 30분당 " : 청소년, 어린이 복식: 어른 30분당 " : 청소년, 어린이	750 550 900 700
	서울대공원 스케이트장 사용료	어른: 1회 입장에 대하여 청소년: " " 어린이: " " 스케이트대여: 1회에 대하여 " 날갈이: "	900 700 500 1,000 500
	스케이트장사용료	어른: 1회에 대하여 청소년: " " 어린이: " "	450 400 350
	롤라스케이트장 사용료	어른: 1시간당 청소년: " " 어린이: " "	450 400 350
	실내정구장사용료	평일: 면당 1시간 토, 일, 공휴일: "	3,000 4,000
	실외정구장사용료	평일: 면당 1시간 토, 일, 공휴일: "	800 1,500
	장안평수영장사용료	어른 1회에 대하여 청소년 " " 어린이 " "	1,000 800 500

16-6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종별	시설명	사용구분	금액	비고
운동시설	어린이수영장사용료	1회에 대하여	200	
	수영장사용료	어른 1회에 대하여	1,400	
		청소년 "	1,000	
		어린이 "	800	
보트장사용료		2인승: 30분당	1,100	
		3인승: "	1,500	
유화	88열차	어른: 1회에 대하여	1,100	무폰사용시
		청소년: "	900	10% 할인
		어린이: "	600	
체육관	해적선	어른: 1회에 대하여	700	
		청소년: "	550	"
		어린이: "	400	
체육관	대관람차	어른: 1회에 대하여	600	
		청소년: "	400	"
		어린이: "	300	
체육관	전자전투기	어른: 1회에 대하여	500	
	하늘차	청소년: "	350	"
		어린이: "	200	
체육관	다람쥐통	어른: 1회에 대하여	400	
	오토바이	청소년: "	300	"
		어린이: "	200	
체육관	양궁	어른: 1회에 대하여	400	
		청소년: "	300	"
		어린이: "	200	
체육관	두꺼비차	어른: 1회에 대하여	350	
		청소년: "	300	"
		어린이: "	200	
체육관	미니레일, 도깨비집	어른: 1회에 대하여	300	
		청소년: "	250	"
		어린이: "	200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16-7

종별	시 설 명	사 용 구 분	금 액	비 고
유 회 시 설	펭이놀이, 이충목마 교마기차	어 른: 1회에 대하여	300	구 푸사용시
		청소년:	200	10% 할인
		어린이:	200	
	회전컵, 요술집 바즈카포, 아기차	어 른: 1회에 대하여	300	
		청소년:	200	
		어린이:	150	
	과학놀이 밧데리카, 아풀로의 자, 비행기	1회당:	100	
		어 른: 1회에 대하여	300	
		청소년:	200	
		어린이:	150	
	회전목마	어 른: 1회에 대하여	250	
		청소년:	200	
		어린이:	150	
	유 모 차	1일 1회당	800	
	조 랑 말	1회당 (코스)	550	
체 육 공 원 민	정 구 장 축구장, 야구장	면당 1회사용 (1시간)	300	
		면당 1회사용 (2시간)	3,000	단체독점사용시 적 용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	1,100	
		"	600	
기 타 시 설	안의사기념관	어 른: 1회에 대하여	200	
		청소년:	150	
		어린이:	100	

## ◎ 서울특별시고시 제 33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

거 친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5. 22

서 울 특 별 시 장

16-8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2. 사업주체 : 한국통신공사 을지전신전화국 주택조합 조합장 차진판  
 중구 을지로6 가 58-5  
 3. 주요변경 승인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강남구역 삼동 134-10의 26 필지	강남구 역 삼동 134-10의 28 필지
면 적	20,611.725 ㎡	21,048.8 ㎡
규 모	아파트 3 동 300 세대	아파트 2 동 390 세대
건축면적	32,262.53 ㎡	84,825 ㎡ ( 90세대증 )
사업기간	'85.1-'85.12	'85.1-'86.3.31
사업비	10,528,000천원	13,959,000천원

### ◎서울특별시 고시제 338호

####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 시행허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2 호(84.11.1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당시 공고 제 227 호(85.4.8)로 도시계획 사업(가스공급설비)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공람공고한 가스공급 설비에 대하여, 동부지내 설비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5.2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고척동 66-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  
 다. 사업시행면적 : 11,757 ㎡( 건물총연면적 916.5 ㎡, 건축면적 360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종로구 신문로 2 가 6 번지  
 강남도시 가스(주) 대표 정문원  
 마. 사업시행기간  
 허가일 - '86.6.30  
 바. 위치도 및 계획면면도  
 별첨(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관계인 성명 및 주소 : 별첨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2 )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단위 : ㎡ )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주소·성명
구로구고척동	66-2	천	63,308	9,496	'78.12.7 소유권 이전말소
" "	66-7	"	7,773	1,652	'78.12.7 소유권 이전말소
" "	71-2	"	2,301	292	'78.12.7 소유권 이전말소
" "	279-8	"	787	27	'78.12.11 소유권 말소
" 구로동	631-3	"	1,455	22	'78.12.7 소유권 말소
" "	631	"	10,388	268	'78.12.7 소유권 말소
계			86,012	11,757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9 호

도시계획사업 ( 시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81.2.3)로 도시계획시설 ( 시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구의동 546-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배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5. 2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동내문구용두동 33-1 (주)신대동 대표이사 정재문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

사업명칭 : 서울동부종합시외버스 정류장(터미널)

다. 사업시행규모

부지면적 - 36,704 ㎡

건축면적 - 12,653.38 ㎡  
( 승하차장시설, 옥탑재외 )

라.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시 종대문구 용두동 33-1  
(주)신대동 대표이사 정재문

마. 사업기간 : '85.5.10-'86.6.9

바. 위치도 및 계획면도 : 별첨(생략)

사. 사용할 토지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6-1 일대  
( 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

아. 공사설계도서 : 별첨 ( 도면생략 )

첨 부 : 토지조서

16-10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 토지조서

지번	지역	지구	면적	소유자
성동구구의동 546-1	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자동차정류장 고시지역)	36,704.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 호

을지로2가구역제10지구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332 호 (79.7.24)  
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 고시 제 816  
호 (84.12.31)로 변경인가된 을지

로 2가 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조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  
가하고 동법 제 16조 및 동법시  
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5.22  
서울특별시장

## 가. 변경인가내용

구분	기정	변경
1. 사업의 명칭	을지로2가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시행구역	중구 을지로2가 9-1 번지 일대 ( 25필지 )	을지로2가 9-1 번지 일대 ( 28 필지 )
3. 시행면적	4,297 ㎡	4,857.9 ㎡
4. 시행자	내외홍업(주) 대표 김성우	변경없음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중구 을지로2가 9-1	"
6. 시행 기간	'79.7.24-'85.12.31	"
7. 사업시행계획서	별첨 (생략)	"
8. 건축계획		
대지면적	4,009.3 ㎡	"
건폐율	40 %	"
용적율	635 %	"
층 수	지상 15 층, 지하 3 층	"
주용도	업무 및 판매사업	"

나. 변경사유 : 공공용지 추가확보로 시행 구역 변경

제 1097 호 사

보 1985.5.22 16-11

## 1) 수용 또는 사용 할토지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번 경 전						
	지 번	지 목	지적(㎡)	대지(㎡)	공공요지(㎡)	소 유 지	
1	울지로 2 가 3-1	대지	735.2	735.2	-	내 외 흥 업	
2	" 3-2	"	13.2	13.2	-	"	
3	" 4-2	"	30.1	30.1	-	"	
4	" 7	"	168.6	168.6	-	"	
5	" 8	"	264.5	264.5	-	"	
6	울지로 9-1	"	1,482.6	1,482.6	-	"	
7	울지로 2 가 9-2	"	9.9	9.9	-	"	
8	" 9-3	"	9.9	2.9	-	동 국 계 강	
9	" 9-4	"	79.3	11.5	-	"	
10	수하동 50	"	4,998	4.3	-	"	
11	" 64	"	112.4	4.1	108.3	개 성 상 회	
12	" 65-3	"	150.4	66.5	83.9	황 회 주	
13	" 65-4	"	12.5	.	12.5	"	
14	남대문로 1 가 25-1	"	175.2	92.2	83	김 명 회	
15	" 27-1	"	65.8	65.8	-	김영배 · 박계자	
16	" 28-1	"	9.2	9.2	-	정만표 · 정환중	
17	울지로 2 가 5-1	"	569.9	569.9	-	동 원 산 업	
18	" 6	"	221.5	221.5	-	"	
19	남대문로 1 가 26-1	"	52.2	52.2	-	"	
20	울지로 2 가 1-3	도로	112.4	39.2	-	서 울 시	
21	수하동 63-3	"	238	3.7	-	"	
22	남대문로 1 가 48-4	"	561.4	7.2	-	"	
23	" 75-1	"	129.9	41.9	-	"	
24	" 25-3	"	27.4	27.4	-	국 유	
25	울지로 2 가 6-1	"	4.3	4.3	-	"	
26	수하동 64-1	대지	142.1	81.4	-	"	
소 계				4,009.3	287.7		
계		26필		4,297			

16-12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변 경 후						
지 번	지 목	지적(회)	대지(회)	공공용지(회)	소유자	소유권의의 관리자
을지로2가3-1	대지	735.2	735.2	-	내외홍업	서울신탁은행(근저당)
" 8-2	"	13.2	13.2	-	"	한국외환은행(근저당)
" 4-2	"	30.1	30.1	-	"	금성투자금융(근저당)
" 7	"	163.6	168.6	-	"	한일은행(근저당)
" 8	"	264.5	264.5	-	"	한국상업은행(근저당)
" 9-1	"	1,482.6	1,482.6	-	"	중앙투자금융(근저당)
" 9-2	"	9.9	9.9	-	"	
" 9-12	"	2.9	2.9	-	"	한국외환은행(근저당)
" 9-13	"	11.5	11.5	-	"	한일은행(근저당)
수하동 50-6	"	4.3	4.3	-	"	금성투자금융(근저당)
" 64	"	112.4	4.1	108.3	"	
" 65-3	"	150.4	66.5	83.9	"	
" 65-4	"	12.5		12.5	"	
남대문로1가25-1	"	175.2	92.2	83	"	
" 27-1	"	65.8	65.8	-	"	
" 28-1	"	9.2	9.2	-	"	
" 5-1	"	569.9	569.9	-	동원산업	
" 6	"	221.5	221.5	-	"	
" 26-1	"	52.2	52.2	-	"	
" 1-3	도로	112.4	39.2		서울시	
수하동 63-3	"	238	3.7	-	"	
남대문로1가48-4	"	561.4	7.2	-	"	
" 75-1	"	129.9	41.9	-	"	
" 25-3	"	27.4	27.4		국(건설부)	
을지로2가 6-1	"	4.3	4.3		국( " )	
수하동 64-1	"	29	29		국(재무부)	
" 64-2	대지	52.4	52.4		국( " )	
" 27-5	"	128.5		128.5	이영준•이대영	
삼각동 111-1	"	478.4		478.4	이기준•정금순	
소 계			4,009.3	894.6		
계		29필		4,903.9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16-13

## 법제 36 조의 지장물등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지적(㎡)	소유자		
						주	소	성명
1	중구삼각동	111-1	근린시설	목조와습	89.12	종로구청운동 57-28 은평구불광동 436-8		이영준 이대영
2	"	"	부속건물	"	99.04			"
3	"	"	와사	"	50.98			"
4	"	"	부속건물	"	15.04			"
5	"	"	사랑	"	19.44			"
6	"	"	부속건물	"	27.40			"
합계					301.02 ㎡	중	일부	

## ◎서울특별시고시제 341호

원서근린공원 조성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73호 ('85.2.16)로 결정된 원서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시청 공원과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5. 5. 22

서울특별시장

- 원서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 : 별첨
- 관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끝.

16-14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分	시 설 내 용	부 지 면적 (m <sup>2</sup>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총 계		10,004.6	10,004.6 (100%)	
공원 시설	조경시설 퍼플라 1개소, 화단, 찬디발	2,128	1,854	감 274
	휴양시설 산책로 220 m, 정자목 1개소	710	1,155	증 445
	공원 관리 조명등 51개소, 휴지통 26 개	52	52	변경없음
	편익시설 음수대 2개소, 경사로 2개 소, 장의자 68개, 계단 6개 소, 변소	580	374	감 206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놀이마당)	380	455	증 75
	소 계	3,850 (38.8%)	3,890 (38.8%)	
녹 지	잣나무와 26종 3,253주	6,154.6	6,114.6	교목 : 230주 관목 : 2,994주 덩굴 : 29주

## \* 시설조서

구 分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 지 면적 (m <sup>2</sup>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총 계				10,004.6	10,004.6	
조경 시설	1	옥외휴양시설	공원 서측 (대화마당)	1,568	1,294	감 274
	2	"	공원 남측 (만남마당)	315	315	변동없음
	3	옥외전시장	공원 동측 (전시마당)	245	245	"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16-15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 지 면적 (m)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			2,128	1,854	감 274
휴양시설	4	산책로, 보도	서북측 남측	430	695	증 265
	5	정자목, 가로공원		280	460	증 180
	소재			710	1,155	증 445
공원관리 시 설	6	조명시설등		52	52	변동없음
편익시설	7	경사로, 변소 등		580	374	감 206
운동시설	8	다목적 운동장	놀이마당	380	455	증 75
기 타	9	녹 지		6,154.6	6,114.6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공 랍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198호 ('72.4.7)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 192 ('75.11.24) 지적 고시된 암  
사동 607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  
사업(도로, 하수도) 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2의 규정  
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  
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  
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트록과  
나. 공람기간 : '85.5.22 ~ '85.6.4  
(14일간)

1985. 5.22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랑 개 요

- 사업명 : 암사동 607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 : 암사동 607번지
- 사업규모 : B = 15 m, L = 320 m  
아스팔트포장 A = 26.7 a  
하수도 D = 600 %, L = 320 m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1년
-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문의 바랍.

16-16 제 1097 호 시

보

1985.5.22

## 토 지 종 서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암사동 608-62	전	1,387	강남구 방배동 725 방배 실호(애) 바동 105 조원
" " -64	대	12	강서구 화곡동 400-7 조진태
" " -65	대	120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애) 7-602 이상윤
" " -66	대	49	강서구 화곡동 400-75 윤영환
" " -67	대	50	성동구 행당동 317-602 이상효
" " -68	대	135	성동구 용봉동 265-10 이길임
" " -69	대	13	강동구 암사동 449-1 한영채
" " -33	대	149	" " 608-33 이은상
" " -70	대	32	" " " -34 이홍천
" " -71	대	8	" " " -3 김종배
" " -71	대	36	인천시 북구 부개동 120 강용훈
" " -73	대	41	강동구 암사동 607-1 김종해
" " -74	대	101	" " 599 백창주
" " -75	대	30	" " 607-1 김종해
" " -76	대	31	" " 599 백창주
" " -77	전	1,779	" " 607-36 정난복
" " -37	대	126	" " 608-37 최전철
" 606-10	대	252	마포구 동교동 203-54 정승화
" " -11	대	226	"
" " -14	대	6	동대문구 면목동 86-13 성정자
" " -12	대	84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대식

## 지 장 블 조 서

위 치	품 명	면 적	비 고
암사동 608-2	버섯	1단 86 (4단 344)	
" " -54	호박	1,239	암사동 608-1 김제승
" 606-11	"	226	" 607-3 김승조
" " -10	"	252	"

1107